

2021년 수원상공회의소 온라인 일자리 사업설명회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운영안내

## -청년대상-

2021. 03. 10(수) 수원상공회의소



# 목 차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2. [기업]가입자격 확인사항
3. 청약정보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4. 청약운영관리 안내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필자 만39세 한정)

##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① 최종학력

- 학 력 : 검정고시 [ ] 고등학교 [ ] 대학 [ ] 대학교 [ ] 기타 [ ]
- 형 태 : 졸업 [ ] 졸업예정 [ ] 수료(졸업유예) [ ] 재학 중 [ ] 휴학 [ ]
- 유형1 : 주간 [ ] 야간 [ ] 재직자과정 [ ] 사내학교 [ ] 기타 [ ]
- 유형2 : 방송통신 [ ] 사이버대학 [ ] 학점은행제 [ ] 해당없음 [ ] \* 석사졸업 이상자는 학사졸업으로 체크

(시행지침3p, 4p)

### [기본가입자격]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A기업 19.1.1~20.3.31(15개월)
- B기업 20.5.1(정규직 입사) \*최종학교 졸업(20.02.19)
- 고등학교,주간대학 졸업 → 적격
- 야간대학, 원격대학, 계약학과 등 졸업 → 부적격

### [고등학교/대학 재학중인자 허용범위]

-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   |   |
|---|---|
| <p>[대학 재학중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예정일 : 21.2.19</li> <li>○ 20년여름방학시작일 : 20.8.1</li> <li>* 방학기간 확인 : 학사일정</li> </ul>     | <p>정규직입사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이후 → 적격</li> <li>▪ 20.8.1이전 → 부적격</li> </ul>   |
| <p>[고등학교 재학중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예정일 : 21.2.19</li> <li>○ 선도기업확정일 : 20.10.1</li> <li>○ 출석일2/3기준일: 20.10.1</li> </ul> | <p>정규직입사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1이후 → 적격</li> <li>▪ 20.10.1이전 → 부적격</li> </ul> |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② 고용보험이력

① 의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초과 [ ] 이하 [ ]

↳ '초과'일 경우, 최종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정규직취업일 이전까지 실직기간 6개월 이상 [ ] 미만 [ ]

↳ '이상'인 경우 실직기간 동안의 근무여부 일용(아르바이트) [ ] 사업소득(3.3%) [ ] 해당없음 [ ]

• 총 12개월이란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 (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시행지침 3p, 6p)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산정일 제외 : 고용보험 3개월 이하

○ A기업근무 19.1.1~20.3.31(15개월) [실직기간 20.4.1~20.4.30(1개월)]

○ B기업근무 20.5.1~7.31(3개월) [실직기간 20.8.1~20.12.31(5개월)]

→ 실직기간 중 일용근무 20.8.1~20.10.31(3개월)

○ C기업입사 21. 1. 1(정규직)



▪ 일용근무(x)6개월실직 → 적격

▪ 일용근무(o)3개월실직 → 부적격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③ 근로(연봉)계약 조건

- 정규직 입사 전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이력 있음 [ ] 없음 [ ]
  - ↳ '있음'의 경우 일용직 근무 [ ] 자유직업소득(프리랜서) 근무 [ ] 계약직 근무 [ ] 기타 근무 [ 예시)정규직 ]
-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 있음 [ ] 없음 [ ]
  - ↳ '있음'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 100% 기준적합 예 [ ] 아니오 [ ]
  - ↳ '있음'의 경우 3개월 초과 수습기간 있음 [ ] 없음 [ ]

(시행지침 2p, 8p)

### [기본가입자격]

#### 1) 급여수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2021년 최저임금 : 1,822,480원 (산입범위 : 정기상여15%(273,372원), 복리후생3%(54,674원) 초과분 산입)

#### 2) 자체 수습기간 운영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수습 시작일)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 가입 허용

### [가입제한 자]

####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③ 근로(연봉)계약 조건

- 정규직 입사 후 근무장소 채용기업주소지    본사[ ]    지사(지점)[ ]    재택근무 [ ]    해외근무[ ]    현장근무 [ ]
  - ↳ 현장근무의 경우 출퇴근관리 있음 [ ]    없음 [ ]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 ]    미만 [ ]
-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적합    예 [ ]    아니오 [ ]
- 월 급여총액이 월 350만원(연봉4,200만원) 초과 예상    예 [ ]    아니오 [ ]

↳ '아니오'의 경우에도 정규직 입사 후 1년간 월급여 총액350만원(연봉4,200만원)초과시 청약철회 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성명 : \_\_\_\_\_ (서명)

(시행지침 5p, 8p)

### [가입 제외자]

- ⑥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고정급) 포함
  -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변동급) 모두 포함
  -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유지
  - \*\*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시 중도해지
- ⑧ 재택 근무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될 수 있음.

### [가입 제한자]

-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 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 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④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생애최초 가입자 예 [ ] 아니오 [ ]  
↳ '아니오'일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되어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예 [ ] 아니오 [ ]
-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예 [ ] 아니오 [ ]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시행지침 5p, 28p)

### [재가입]

####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 1)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취업기간 연장**  
- 21.1월 ~ 6월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6개월 기간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 [가입제외자]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시행지침 5p, 9p, 10p)
<p>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예 [ ] 아니오 [ ] ↳ '예'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임대업인 경우 예 [ ] 아니오 [ ]</p>	<p><b>[가입제외 자]</b>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b>*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b></p>
<p>⑦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 예 [ ] 아니오 [ ]</p>	<p><b>[가입제한 자]</b>            ② 사업주(법인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b>*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b></p>
<p>⑧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복무 복무예정 [ ] 해당없음 [ ]</p>	<p><b>[가입제한 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b>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b>-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b></p>
<p>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수혜자 의무종사기간 종료 [ ] 의무종사기간 진행 중 [ ] 해당없음 [ ]</p>	<p><b>[가입제한 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b>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수혜자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b>-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b>  <b>-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은 중복가입 가능</b></p>
<p>⑩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의무종사기간 종료 [ ] 의무종사기간 진행 중 [ ] 해당없음 [ ]</p>	<p><b>[가입제한 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b>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b>-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b></p>



# 1. [청년]가입자격 확인사항

## 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각종 통장사업
- |                        |                        |          |
|------------------------|------------------------|----------|
| 참여 중 [ ]               | 참여했었음 [ ]              | 해당없음 [ ] |
| ↳ '17년부터[], '18년이후부터[] | ↳ '17년부터[], '18년이후부터[] |          |

(시행지침 8p)

### [가입 제한자]

-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2. [기업]가입자격 확인사항



## 2. [기업]가입자격 확인사항

### 기업 참여자격 확인사항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청년공제 가입(예정) 청년 정규직 입사일 당시 5인 미만 [ ] 초과 [ ]
- ↳ 5인 미만일 경우 벤처기업 [ ] 중기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  
청년창업기업 [ ]기 타 [ ]

(시행지침 13p)

#### [기본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3.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3.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청약철회 23p]

#### 1) 월 급여총액 350만원(연봉4,200만원) 초과인 경우

-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조건

2) 청약가입 전 기업·청년이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선발요건이 충족되어 청약이 가입 되었으나 **청약가입 후 사실과 다른 조건이 확인**되었거나 기타 선발요건 불충분 사유가 발생되어 청약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청년공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해당-

-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3.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중도해지 25p~27p]

- 1) 실시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 2) 근로계약의 변동으로 재택근무, 주 30시간 미만 근무 등 참여자격 요건에 미달 될 경우
- 3) 청약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 4) 청약가입 기간 중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관계로 변동이 생긴 경우
- 5) **본인부담금 6회차 이상 미납일 경우**
- 6) 기업에서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7) 실시기업의 규모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 8) 실시기업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고용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9) 실시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 체납,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등
- 10) 청년 변심에 의한 경우

#### [참고] 중도해지 환급금 (참여연도: 2021년)

[단위:천원]

청약승인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미만	12월이상~18월미만	18월이상~24월미만
정부 지원	청년귀책	0	0	1,600	2,300
	기업귀책	200	500		
기업지원		전액환수			
자기부담		납부누계액 및 이자			

- \* 2년(3년)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처리
- \* 사업주 귀책사유로 마지막 회차 미적립 상태에서 청년이 환급금을 희망
  - 환급기준: 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만 수령 / 기업지원금은 전액 국가로 환수



### 3.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납부유예(납입중지) 24p]

사 유	납부유예기간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3.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해당기간
1.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주 30시간 미만 근무시간 단축 포함) 3. 개인질병 4.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12개월까지
1. 업무상 재해	24개월까지

- 코로나19관련 회사귀책 휴직, 휴업의 납부유예기간연장 납입중지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중도해지 하여야 하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해당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공제 유지  
 → 단, 최대 연장시점(만료시점)은 '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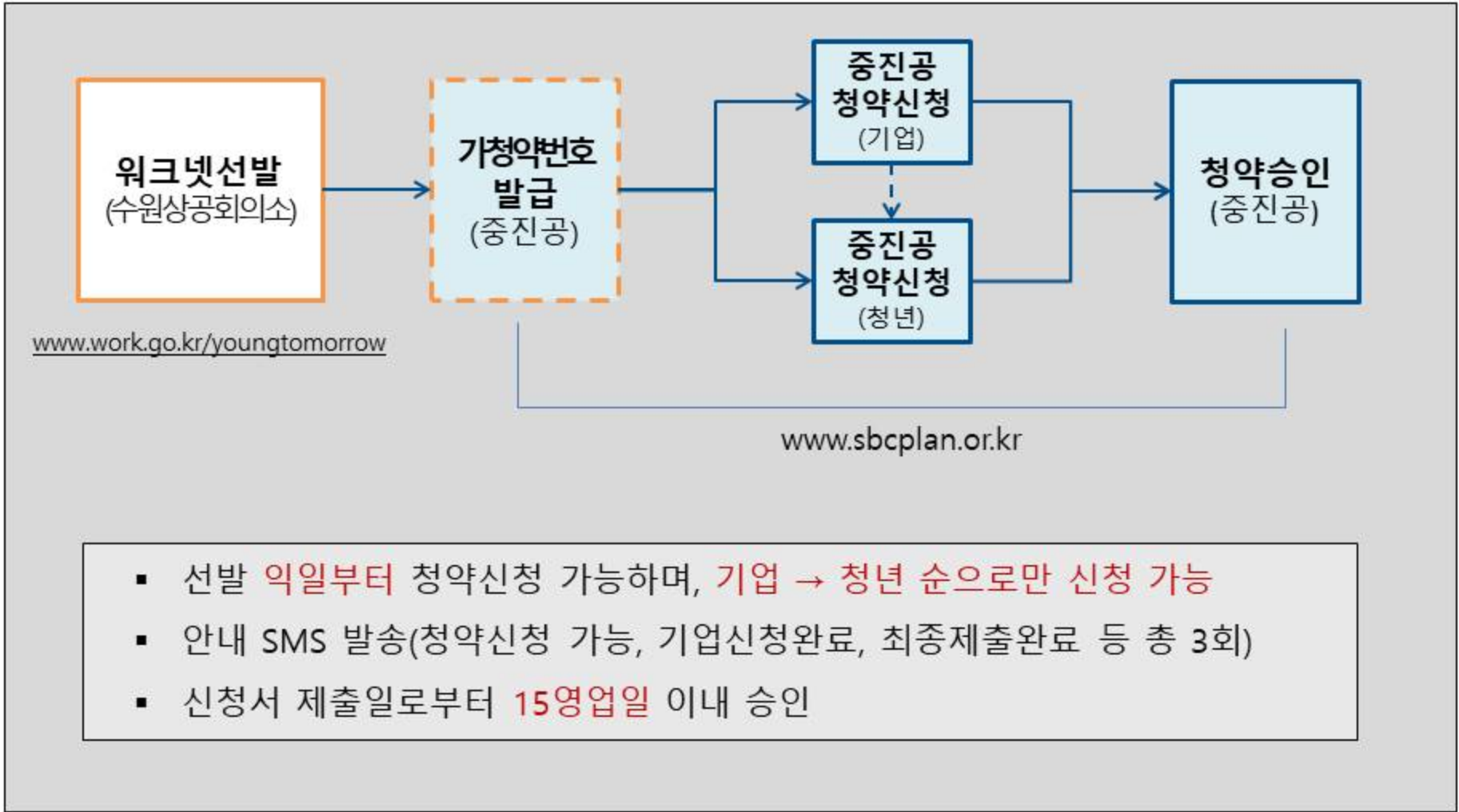


## 4. 청약운영관리 안내

[주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1. 청약 신청 및 승인



- 선발 **익일부터** 청약신청 가능하며, **기업 → 청년 순으로만 신청 가능**
- 안내 SMS 발송(청약신청 가능, 기업신청완료, 최종제출완료 등 총 3회)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승인

## 2. 공제부금 적립 등

### <청년공제 적립구조>



**2**

적립 주기	1차	2차	3차	4차	5차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 (적립)금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0만원)	60만원 (170만원)	60만원 (230만원)	70만원 (300만원)
정부지원 (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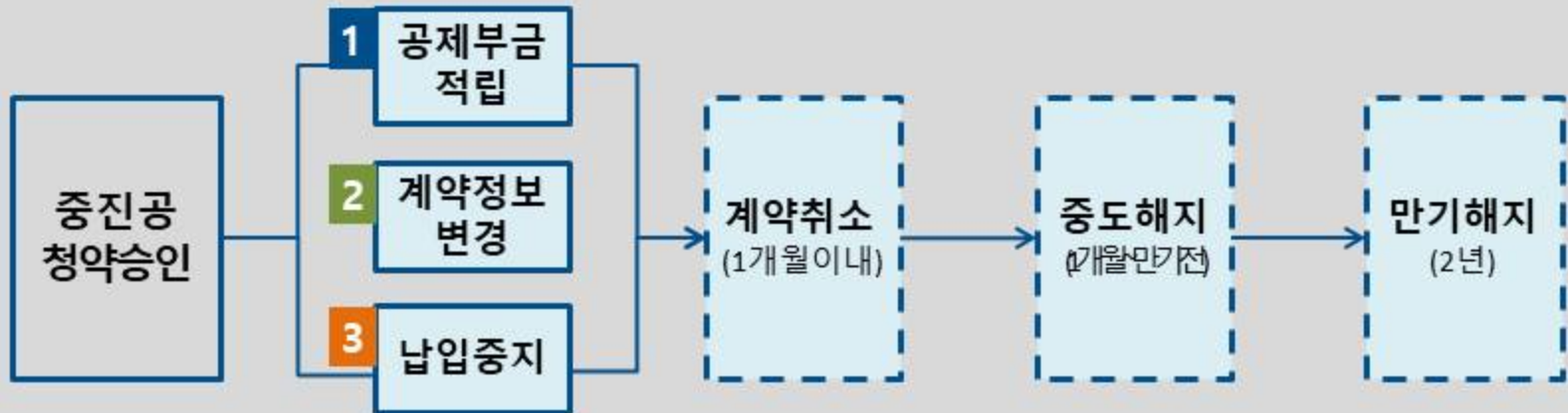
- 청년의 본인납입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24개월(125,000원 x 24개월) = 3,000,000원

**2**

- 기업/정부지원금은 **기업에서 근속관리를 통한 회차별 신청** 24개월(2년)간 5회 = 9,000,000원

**2년 만기금 12,000,000원**

## 2. 공제부금 적립 등



- 1**
- 청년의 본인납입금은 지정한 납부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자동이체 지정일을 포함하여 최대 3회까지 이체 시도  
\* 지정 납부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청구
  - 총 3회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 되며, 미납공제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납부 가능
  - 미납금 납부는 청년(핵심인력) 본인명의로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만 가능

- 2**
- 청년 개명, 단순 사업장 정보 변경(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등)시 기업 및 청년이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중진공([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홈페이지에 직접 회원정보 변경 실시  
\* 워크넷 홈페이지는 청년내일채용공제 사업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변경
  - 운영기관 제출서류: 기업=사업자등록증, 핵심인력=주민등록 초본

- 3**
- 납입중지 신청 후 서류 미비로 승인이 보류될 경우 청년에게 문자 발송

# 3. 중도해지



1

-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기업이 각각 신청 (해지사유 동일 여부 확인 후 접수)
- 유의사항
  - 계약자(청년, 기업) 중 1명 이상 해지신청시 공제부금이 납입 중지되므로, 미납분은 해지신청 전에 반드시 납부완료
  - 중도해지 신청 이후에는 납입중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납입중지 우선처리

2

-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신청접수 후 30영업일 이내 지급
  - \* 단, 증빙서류 미비 또는 취업지원금 미적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30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4. 만기 등 기타사항

### 만기해지

- **만기일** : 청약개시일로부터 24개월까지(○) / 청년개인납부금 적립완료일(x)
- **만기금 수령기간** :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만기달 급여수령 후) 후 약 1개월
- **만기 지급이율**
  - 매 분기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공시자료에 게시
  - 적용기준 : 계약성립일 ~ **사유발생일까지는 연복리**, 사유발생일 **이후부터는 단리** 적용
  - 최종 이자지급액은 공제부금 납부일 및 정부지원금 적립시기에 따라 상이

### 연계가입

-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5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연계가입에 해당
- 청년공제 마지막 정부지원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연계가입시 내일채움공제(5년형) 약관에 따름
- 문의전화 : 031-244-3454



사업참여 하신 모든 청년분들의 만기금 수령을 기대합니다.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TEL)031-244-3454